

2022년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종합감사 결과 공개문

2023. 5.



농림축산식품부
감사담당관실

I

감사 개요

☐ 감사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19조(자체감사계획의 수립·실시) 및 제21조(실지 감사)의 규정

☐ 감사목적

- 주요 연구개발사업 등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전반적인 업무 및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기관운영의 효율성 제고

☐ 감사대상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4본부 10실)

☐ 감사범위 및 내용

- 최근 3년간('19~'22년 현재)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추진실태 및 기관운영 등 전반에 관한 사항

☐ 감사기간 및 인원

- 감사기간 : 2022. 10. 13. ~ 10. 28.(12일)

* 예비감사 : 10. 11. ~ 10. 12. (2일)

- 감사인원 : 감사담당관 등 7명

II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요약

1	업무추진비 집행 및 관리 미흡		
처분요구	통보(2)	관계기관	운영지원실, 윤리감사실

- 업무추진비 집행시에는 경조사비 현금지급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클린카드를 활용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2019~2021년 기간 총 88건을 카드가 아닌 입체불 청구방식 등으로 집행하였음
- 코로나19 비상경제체제 대응을 위해 2020년도에 한시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외식업체에 한해 선결제 및 사후정산하되, 정부구매카드(클린카드)를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 2020년도에 외식업체가 아닌 화훼업체에 경조화한 비용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선결제 및 사후정산함
- 자체 규정 「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규칙」에서 업무추진비 집행실적 등 법인카드 이용실태에 대하여 수시로 일상감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음에도 미실시함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① 업무추진비는 클린카드를 사용하고, 별도 지침, 규정 등에서 정하지 않는 한 선결제 방식으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통보)

②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법인카드 이용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및 자체 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안 마련.시행 요구 (통보)

2	계약 관련 선금 지급 부적정		
처분요구	통보	관계기관	운영지원실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회계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고, 잔여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된 예산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 연말에 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상대자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기 어려운 선금(계약금액의 30 ~ 80%)임에도 요청대로 전액을 지급함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계약업무 추진 시「(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가능한 범위에서 선금이 지급되도록 업무담당자 자체교육 등 필요한 조치 요구 (통보)

3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미이행에 따른 강제이행금 납부 부적정		
처분요구	기관주의	관계기관	인재경영실

- 해임처분 근로자 2인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하고 30일 내 원직 복직 및 해당기간 임금을 지급토록 구제명령하였고, 「근로기준법」제33조에 따라 구제명령 이행시까지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년 2회에 걸쳐 반복 부과하고, 구제명령 이행 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토록 하고 있으므로,
- 설사 구제명령의 이행이 곤란한 여러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우선 복직 등 선조치 후 다른 대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었음
- 그런데, 원직 복직 시 징계사유로 부분 인정된 인사명령 불응과 관련한 추가 징계를 해임 근로자들이 거부하고, 대다수 직원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제명령을 미이행하였고, 이행강제금(1차) 29,250천 원을 납부함

농림축산식품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해임 근로자 2인에 대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하고 이행기일을 정하여 원직 복직 등 구제명령을 하였음에도 이를 전부 이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 요구 (기관주의)

4	일상감사 운영 미흡		
처분요구	부서주의	관계기관	윤리감사실

- 일상감사 사항 접수시에는「일상감사 기준」에 따라 일상감사일지에 검토 의견 등을 작성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소관 집행부서에 회송하여야 하나,
- 인력문제 등을 이유로 검토의견서를 사업부서에 회신하지 않고, 해당 사업 공문 기안 시 전자결재 중간검토자로 참여하는 식으로 일상감사를 간소화하여 실시함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감사규정」에 따라 일상감사 사항 접수 및 검토의견서 회신 등 관련 절차를 따르지 않고 해당 사업 결재 중간검토자로 참여하는 식으로 일상감사 업무를 소홀히 한 윤리감사실에 대해 “부서주의” 조치 요구 (부서주의)

5	국외출장 및 해외연수 결과 공개 미흡		
처분요구	통보	관계기관	인재경영실

- 「여비지급규칙」에 따라 국외출장자는 귀임 후 1개월 이내에 국외출장 계획과 출장결과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나,
- 최근 3년간(2019 ~ 2022년 현재) 국외출장, 해외연수를 25회 실시하고 그 계획 및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았음.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최근 3년간 공개하지 않은 국외출장, 해외연수 계획 및 결과보고서 25건에 대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향후 국외출장, 해외연수 시 1개월 이내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요구 (통보)

6	징계 감경 관련 제도 미흡		
처분요구	부서주의	관계기관	인재경영실

○ 징계위원회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감경기준과 같이 그 징계 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도록 운영하면서,

- 「포상 및 징계 시행규칙」에 ‘징계의 감경 시 동일한 공적으로 중복하여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다른 공적이 있는 경우 향후 다른 징계 시에 감경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징계처분이나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 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도록 「포상 및 징계 시행규칙」을 개정 요구 (개선)

7	제규정 운영 미흡		
처분요구	개선(3)	관계기관	운영지원실, 인재경영실

-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재택당직자가 보안점검 등 당직근무자의 일반업무를 수행하도록 사무실 대기 근무 시간을 정하지 않았고,
 - 비상연락에 대비한 당직 비품 중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도, 직원 비상 연락망 등 필수 비품을 휴대하도록 정하지 아니함
- 징계양정 기준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에 적시된 추가 피해 발생 관련자(2차 가해자) 등에 대한 양정 기준이 누락
- 자체 「정보보안 규칙」에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를 「개인정보 보호법」의 ‘즉시 파기’와 달리 5일 이내에 파기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및 개인정보 보호계획 수립 등의 수행 업무, 개인정보 유출통지 절차를 반영하지 않음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① 재택당직과 관련하여 당직자 휴대 필수 비품 목록 명시, 일과시간 후 사무실 대기 규정 삭제 등 현실에 부합되도록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개선 요구 (개선)

② 「포상 및 징계 시행규칙」에 성희롱·직장내 괴롭힘 추가 피해 발생 관련자 등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추가하도록 요구 (개선)

③ 「개인정보 보호법」에 정한 개인정보 처리기간·절차를 「정보보안 규칙」에 반영하도록 요구 (개선)

8	연구개발비 집행관리 미흡		
처분요구	개선	관계기관	사업기반실

○ 연구개발기관이 관련 규정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 지도 등 관리를 함으로써 연구개발비 정산결과 불인정 금액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하나,

- 최근 5년간 수행한 연구개발비 정산결과 불인정 연구비 누적금액은 2억9천만 원으로 확인됨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비 정산 시 불인정 금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에 교육참여 실적을 평가하는 방안 마련 조치 요구 (개선)

9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활용 부적정		
처분요구	개선	관계기관	융복합사업실

○ 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평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를 위한 단계평가와 최종평가, 과제의 변경 및 중단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특별평가 등을 위해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운영 중으로,

- 평가위원 구성 및 운영 시 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위원은 배제하여야 하나,
- 평가위원 서약서에는 평가과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아 평가위원이 해당 과제 연구에 참여한 사례 발생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 평가위원 서약서에 해당 과제 연구에 참여가 제한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위반 시 제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조치 요구 (개선)

10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계획 수립 및 정산 미흡		
처분요구	개선, 통보(2)	관계기관	사업기반실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과 협약서를 체결할 경우 사업비의 효율적인 집행·정산을 위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야 하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에 있는 ‘별첨 자료’ 항목을 제외한 연

구개발계획서 양식을 마련하여, 연구재료비 집행·정산에 필요한 주요
시약명·기자재명을 요구할 수 있는 항목이 없는 상태임

○ 연구개발비 정산 시에는「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에 따
라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의 사용 용도와 집행실적이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나,

- 연구재료비를 연구기간 종료 시점(3~8일 전)에 집행하여도 해당 연구에
사용되었다는 증빙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았고, 연구수당을 기여도
평가와 다르게 집행하여도 소명자료 요청 없이 정산함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연구수당을 받고 계속 연구사업에 참여하
는 공무원은 해당 기관에 겸직허가를 신고 하여야 하나,

- 사업공고문, 협약서 등에 겸직허가 신고에 대한 안내가 없어 대부분
공무원이 겸직허가 신고를 하지 않고 있음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①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 협약서를 체결할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별첨 자료’ 항목을 추가하여 연구개발사업비의 효율적인 집행·정산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 요구 (개선)

② 연구기간 종료 시점에 연구재료비를 구입할 경우 해당 연구에 직접 사용되었다는 증빙자료(연구노트 등)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연구수당을 기여도 평가와 다르게 집행할 경우 소명자료를 요청하는 등 효율적으로 연구개발비를 정산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요구 (통보)

③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연구개발 참여 공무원이 겸직허가를 해당 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사업공고문, 협약서 등에 안내하는 방안 마련 요구 (통보)

11	농림식품신기술 인증 위원회 운영 미흡		
처분요구	권고	관계기관	기술상용화실

○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 운영요령」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위한 3차 종합심사위원회 위원을 선정할 경우 1·2차 심사에 참여한 위원을 제외하는 등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하나,

- 최근 3년간(2019~2021년) 1차 심사에 참여한 위원 3명이 3차 종합심사위원회에 중복으로 참여하는 등 해당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도록 운영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을 위한 3차 심사인 종합심사위원회의 위원을 선정할 경우 1차·2차 심사에 참여한 전문가를 제외하는 등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요구 (권고)

12	농식품 R&D 코디네이터 사업 운영 미흡		
처분요구	통보	관계기관	기술상용화실

- “2021년 농식품 R&D 코디네이터 사업 추진계획(안)”에 따라 코디네이터는 연구개발지원을 최대 7회 이내에서 컨설팅을 하고, 지원업체의 만족도 조사에서 불만족일 경우 다음 연도 참여가 제한되어야 하나,
- 2021년 코디네이터 110명 중 4명은 컨설팅을 기준(7회) 보다 많은 10회~12회 실시하였고, 지원업체 만족도 조사에서 불만족 의견이 제시되었음에도 1명은 2022년 코디네이터로 선정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식품 R&D 코디네이터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기업 컨설팅 횟수, 역할, 범위 등 코디네이터 활동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참여기업 만족도 조사 의견, 컨설팅 실적, 교육역량 등 코디네이터를 종합 평가하는 등 효율적인 코디네이터 관리 방안 마련 요구 (통보)

13	연구개발과제 성과 공개 미흡		
처분요구	통보(2)	관계기관	융복합사업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연구개발 성과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연구개발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식재산권 취득, 영업비밀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 후 비공개 승인 및 기간 연장을 하여야 하나,

- 적정한 검토 없이 연구개발 기관의 최종 보고서 비공개 요청을 승인하여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및 사업화를 저해하고, 신규 연구개발 과제 선정 시 중복성 여부 판단을 어렵게 하였음.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① 연구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비공개 상태인 연구개발 과제 보고서가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인지 검토하여 공개 여부 결정 요구 (통보)

② 연구개발 기관의 비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승인하도록 제도 마련 요구 (통보)

14	연구개발 과제 평가위원 후보단 관리 및 과제 평가 소홀		
처분요구	통보(2)	관계기관	사업기반실, 농생명사업실, 융복합사업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연구개발 사업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평가위원 후보단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연구개발 기관이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는지 철저히 평가하여야 하나,

- 평가위원 후보단 1~3군 등급 5,810명 중 1군이 4,971명(85.6%)에 달

하고 지난 3년간 평가위원으로 활동하지 아니한 자는 3,006명(51.7%)에 이르는 등 구성 및 운영이 미흡함.

- 또한 실험설계, 실험, 통계처리 등이 미흡한 최종 보고서를 평가에서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하고 통과하도록 함.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① 평가위원 후보단의 등급별 변별력을 강화하는 등 연구개발 과제 선정 및 보고서 평가가 공정하고 면밀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치 요구 (통보)

② 연구개발 과제 보고서 평가가 공정하고 면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계평가 강화, 사전 검토 등 평가방식 보완 요구 (통보)

15	연구개발 과제 선정 및 평가 시 부정행위 등 검증 소홀		
처분요구	통보	관계기관	사업기반실, 농생명사업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연구개발 사업의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고 과제 선정과 최종 평가를 철저히 하여야 하나,

- 2개 연구개발 과제 최종보고서가 상당부분 유사·중복되고, 다른 기관의 연구개발 과제와도 유사·중복성이 있는 등 부정행위가 의심됨에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아니하였음.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유사·중복성, 부정행위 등 지적사항에 관하여 검증 및 공동조사 절차를 거치고, 그 결과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 참여제한 등 조치 요구 (통보)